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합52513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변론 종결2021. 3. 23.

판결 선고2021. 4.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403,017원과 그 중 435,586,371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0. 7. 7.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26. 접수 제820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1	E	2018. 4. 19.	2019. 4. 19.	255,000,000
2	F	2018. 4. 19.	2019. 4. 19.	190,000,000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20. 4. 17.로,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20. 4. 17., 보증금액을 171,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아래 나. 2)항 기재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00,000원,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37,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9. 10. 5.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20. 2. 19.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61,478,298원,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75,576,51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9.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이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567,280원,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901,160원을 각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435,586,371원[(261,478,298원 - 567,280원) + (175,576,513원 - 901,160원)]이 남아있고, 위 각 회수금에 해당하는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154원,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에 관하여 246원 합계 400원(154원 + 246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816,3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9. 9. 24. 피고 C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2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26. 접수 제82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9. 9. 24. 피고 D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2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10. 2. 접수 제536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1. 3. 10. 근저당권자 피고 D에게 39,062,0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403,071원(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435,586,371원 + 확정손해금 400원 + 보전비용 1,816,30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435,586,3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9. 24.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2 각 신용보증계약 관련 대출금 외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다수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중 구매자금대출 25,080,00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자연체가 발생하였으며, 그 즈음 다른 다수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 연체가 발생하였던 점, ②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1일 가량 경과한 2019. 10.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2. 19.경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12,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 2 각 부동산과 대전 유성구 H 전 853m² 중 6/70 지분, 대전 유성구 I 전 20m² 중 6/70지분 등 합계 609,671,428원(이 사건 1 부동산 가액 510,000,000원 + 이 사건 2 부동산 가액 89,000,000원 + 위 H 토지 6/70 지분 가액 10,285,714원 + 위 I 토지 6/70 지분 가액 385,714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3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1	J조합	25,874,000원	대출채무
2	기업은행	90,000,000원	신용채무
3	기업은행	300,000,000원	대출채무
4	K	3,360,000원	신용대출
5	L카드	1,416,000원	카드론
6	M카드	954,000원	카드론
7	N카드	1,400,000원	현금서비스
8	L카드	1,200,000원	현금서비스
9	M카드	9,700,000원	현금서비스
10	○카드	530,000원	현금서비스
11	기업은행	154,000,000원	보증채무
12	원고	425,960,000원	보증채무
금액 합계	1,014,394,000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한 채무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7. 5. 30. 15,000,000원, 2017. 7. 28. 5,000,000원, 2018. 2. 2. 6,000,000원, 2018. 12. 17. 6,500,000원, 2019. 1. 16. 3,500,000원, 2019. 1. 31. 16,500,000원, 2019. 2. 12. 10,000,000원, 2019. 3. 21. 6,000,000원, 2019. 5. 10. 4,000,000원, 2019. 9. 26. 10,000,000원 합계 82,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C에게 2018. 11. 13. 10,000,000원, 2019. 1. 7. 6,500,000원, 2019. 2. 25. 10,000,000원 합계 26,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②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B과 사이에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D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에는 합계 3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C, D은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C, D에 대한 약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9. 24. 체결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나) 피고 B이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배당기일인 2021. 3. 10. 근저당권자 피고 D에게 39,062,0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배당액에 해당하는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신

판사강건우

판사김수연

별지